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
(홈페이지 <http://www.vpasset.com>)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-9, 410호 (여의도동, 동북빌딩)
(전 화) 02-761-7649

대 표 이 사 : 윤 종 업, 김 봉 기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전 무
(성 명) 이 성 희 (전 화) 02-761-7648

작 성 자 : (직 책) 과 장
(성 명) 유 아 름 (전 화) 02-761-7649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

(제6-6-1호)

소송 등의 제기

1. 사건의 명칭	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등신청서
2. 원고·신청인	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외 39인
3. 청구내용	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 제기권 및 같은 법 제542조의6 제5항 및 제402조에 근거한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 지 청구권
4. 관할법원	대전지방법원
5. 향후대책	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여부 결정
6. 제기일자	2021. 01. 26
7. 확인일자	2021. 01. 27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1. 본 소송은 주식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2020.11.30. 체결한 주식회사 한국엔컴퍼니와의 차등합병(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)에 대한 임시주주총회(2021.02.15.)의 개최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, 2. 위 계약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위 계약의 승인, 합병 및 해산에 관한 결의를 해서는 아니 되며, 예비적으로 위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결의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임.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